

부천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8. 9. 18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8. 9. 18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6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(98. 9. 19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 강석준)

가. 제안이유

○ 환경사업소 명칭이 업무성격에 적합하며,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업소의 명칭변경과 지번정정에 따른 소재지 변경을 위하여 조례 개정

나. 주요골자

- 사업소 명칭변경 : 부천시환경사업소 → 부천시맑은물사업소
- 소재지 변경
 - 현행 :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538번지
 - 개정 :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434번지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맑은물사업소라고 칭하면 상수도 생각이 우선 떠오르는 것처럼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음	○ 고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됨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맑은물사업소는 수돗물을 먼저 생각하여 민원인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연의 업무인 하수정화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하수정화사업소로 명칭을 수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찬성함

나. 반대토론

- 없 음

5. 심사결과

- 수정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-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

부천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관련 제34호
의결년월일	98. 9. 22 (제64회)

제출년월일 : 1998. 9. 21

제 출 자 : 총무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맑은물처리사업소라고 하면 수돗물을 먼저 생각하게 되므로 본연의 업무와 연관되는 하수정화처리 사업소로 명칭을 수정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쉽게 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○ 사업소의 명칭변경 : 부천시맑은물사업소 → 부천시하수정화사업소

부천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

안 제1조(설치)중 “맑은물사업소”를 “하수정화사업소”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·구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1조(설치) 시민의 보건위생향상과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부천시 <u>맑은물사업소</u> (이하 “사업소”라 한다)를 둔다.	제1조(설치) 시민의 보건위생향상과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부천시 <u>하수정화사업소</u> (이하 “사업소”라 한다)를 둔다.

[수정안포함]

부천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

부천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천시하수정화사업소설치조례

제1조(설치) 시민의 보건위생향상과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부천시하수정화사업소(이하 “사업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2조(위치) 사업소는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434번지에 둔다.

제3조(업무) 사업소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

1.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 처리

2. 분뇨 및 하수처리 공정의 각종 실험
3. 방류수의 수질관리
4. 분뇨 및 하수처리 방법의 연구 개발
5. 시설물 내의 전기, 기계설비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
6. 기타 분뇨 및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

제4조(소장)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,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업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, 감독한다.

제5조(공무원) 사업소에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,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